##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79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모경종·이준석·채현일

김준혁 • 주철현 • 박정현

김한규 · 이광희 · 한병도

윤건영 · 김 윤 · 김영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 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 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의5).

#### 법률 제 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화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게시판 이용자 간 또는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시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지하여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2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	
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	
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위를 말한다. 다만, <u>재화의 공</u>	<u>재화의</u>
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	공급(개인 간 재화의 공급은
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	<u>제외한다)</u>
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	
한 행위는 포함한다.	
	<u>.</u>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
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시조치)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 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_\_\_\_\_\_

---

- 1. 2. (현행과 같음)
- 3.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목적 으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에 따른 전자 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 개자가 게시판 이용자 간 또 는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시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여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함 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 는 행위로 추정할 만한 사정 이 있다고 인지하여 자금이 송금 · 이체된 금융회사에 임 시조치를 요청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